

「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칭 :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

나. 위탁사무

- (1) 근로자문화센터(부속시설물·장비 포함)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
- (2)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·문화시설 운영
- (3)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의 업무 지원
- (4)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다. 시설개요

- (1) 소 재 지 :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
- (2) 규 모 : 부지 15,503㎡/건축연면적 5,975㎡ (지하2, 지상3)
- (3) 지원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공연장, 작은 도서관 등 문화체육 여가시설

층 별	연 면 적	주 요 시 설	비 고
계	5,975.3m ²		
지하2층	307.79m ²	수처리실 및 공조실	
지하1층	2,556.37m ²	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탈의실, 샤워실, 기계실	
지상1층	1,392.6m ²	근로자건강센터, 사무실, 커뮤니티공간, 야외공연장, 문서고, 방송실 등	
지상2층	804.83m ²	도서실, 컴퓨터실, 전시홀, 어학실	
지상3층	913.71m ²	시청각실, 취미교육실, 방송실	

라.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
* 최초 위 탁 : 2011. 8. 30. ~ 2014. 12. 31.(3년 4개월)

1차재계약 : 2015. 1. 1. ~ 2019. 12. 31.(5년)

2차재계약 : 2020. 1. 1. ~ 2024. 12. 31.(5년)

마.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

바. 위탁조건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사. 수탁단체 : 한국노총경북구미지역지부

아. 소요예산 : 2,577,000천원 ※ 2025년 추계액 기준

자. 적정성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

차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카. 성과평가결과

○ 일 시 : '24. 9. 26.(목) 14:00

○ 평 가 자 : 노동권익팀장 외 1명

○ 평가내용 :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,
사업목표 달성수준 등

○ 평가방법 :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

부문	공통분야(60점)			개별분야(40점)			
평가항목	사업계획	예산관리	성과관리	사업추진	사업홍보	전문성	만족도
배점(100)	20	20	20	10	10	10	10
평점(87)	16	17	18	9	9	10	8

파.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: 70점이상으로 적격 판정

- 일 시 : '24. 9. 27.(금) 14:00
- 장 소 : 별관1, 노동조합 회의실
- 참 석 자 : 심의위원 7명
- 심의대상 : 한국노총경북구미지부 (의장 전상구)
- 심의내용 : 심의 배점표에 따른 재계약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

위원 심사대상	A	B	C	D	E	F	G	합계	평균 점수 (최고·저 점수 제외)	비고
한국노총경북지역 구미지부	93	86	92	83	89	91	92	626	90	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
-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
-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노총 경북 지역 구미지부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의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성과평가 및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민간위탁 선정 심의 위원회 심의 결과, 적격 판정을 받았으므로 한국 노총 경북 지역 구미지부에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의 관리·운영을 재계약¹⁾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는 최초 민간 위탁(2011년)한 이래로 한 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 및 운영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철저한 감독·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지금까지 성과 평가를 담당부서(평가자: 노동권익팀장 외 1명)에서만 실시했으므로 장기간 한 단체와 재계약을 통해 위탁 및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1) 재계약: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여 위탁